

영등포구의회
제 19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9. 1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78호로 2015년 9월 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신설 (안 제4조제11항)

나.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정비 및 기능 일부 조정 (안 제5조)

다.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추가 신설(안 제5조의3제5호)

라. 안전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신설(안 제5조의4)

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등 신설(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제12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 제63조제2항, 제68조
- 「건축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5. 7. 23 ~ 8. 12)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1. 17 시행, 2013. 7. 16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 라인」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11항을 신설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제1, 제2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능 일부를 조정하고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함.
-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와 심의 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초 심의를 포함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반복 심의를 제한하고 심의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의2에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함.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의 권한 위임 사무처리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관 련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1.4.14.]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3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120조(이의신청) ① **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⑤ 삭제 <2005.12.7.>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1.7.1., 2012.4.10.,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제56조, 제57조제2항, 제5항부터 제10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개정 2008.7.30.>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

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시장은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①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도시경관·도시설계·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미래·역사·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제57조 제3항의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 실무지원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제57조제4항부터 제10항, 제58조의2, 제62조의 규정은 자문단의 운영에 준용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0.4.]

제68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0.>

②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4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